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47

발의연월일: 2021. 3. 9.

발 의 자:윤재옥·태영호·김희곤

최춘식 · 김승수 · 양금희

홍문표 • 정희용 • 정진석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시 2021년 12월 3 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이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는 여전히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어 정책 지원이 계속 필요한 상황임.

이에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	위한 감면) ①
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	
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	
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	
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	
육을 목적으로 <u>2021년 12월 31</u>	<u>2024년 12월</u>
<u>일</u> 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	31일
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	
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	
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	
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	
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	
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4. (생략)
-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 1. · 2. (생략)
- ③・④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2024년 12월 31일	
1.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